

| 노사정이 바라본 합의의 의미 |

또다시 맞이한 사회적 대화의 위기, 결자해지가 해법이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현 고용노동부관계학회 이사
- 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 전 금속연맹 정책실장



새해 벽두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는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임시체제로 운영되어오다가 지난 4월 23일,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로 개편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문재인 정부, 최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98년 IMF위기 당시 1기 노사정위원회이후 20년 만에 이룬 사회적 합의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노총이 2017년 9월 사회적 대화 재개와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어렵사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계가 만들어져 치열한 논의 끝에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지난 5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사회적 대화의 문은 4개월 만에 다시 닫혔다. 5월말~6월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지난 4~5일 청와대 앞 1박 2일 노숙농성투쟁을 마치고 투쟁의 수위와 대응 단계를 올리는 2라운드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상투쟁 상황이다.

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내용상 독소조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잠식·상쇄하고, 박근혜 정권도 밀어붙이지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일방변경을 강행처리했다.

특히,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5월 19일, 한국노총을 위시한 민주노총, 경총 등 중앙 노사단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쟁점 현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내로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사상 최초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 제안하였다. 이미 5월 17일부터 11기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본격 개시되었던 참이다. 그러나 국회는 중앙 노사단체의 합의 제안을 걷어차다. 노사관계의 기본이자 국제룰이라 할 수 있는 노사자치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내팽개쳤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공공연하게 양대 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에 시비를 걸었고, 사회적 합의 당사자인 경총에는 압박을 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번복시켰다.

정쟁(政爭)으로 4월 국회를 허비하고, 42일 만에 재가동한 5월 국회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니 집권여당과 보수야당 간 짬짜미를 통해 노사자치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무시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과 같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어게인 2004, 노무현 정부 노정파탄 데자뷔'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노정 갈등과 긴장국면이 장기화된다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를 주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의 역할이 있다.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를 꼼꼼히 할 때이다. 모법(母法) 후속작업으로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단체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가 요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어 있다는 핑계로 그동안 논의되어온 기준과 원칙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더욱이 국회 분탕질로 멈춰선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가 불참하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면 더 큰 갈등과 대립의 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조바심은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성과주의에 도취한 일방강행을 일삼고 있는 집권여당에 제동을 걸고, 충고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만들고,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경제민주화 실현 등 굵직한 노동사회경제 개혁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불씨가 완전 꺼질 수 있다.

촛불민심을 받고 출범한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결자해지가 해법이다. 원인제공자로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전, 올해 하반기 중 독소조항 제거 등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온전한 1만 원 실현을 위하여 국민이 납득 가능한 상징적인 목표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럴 때 사회적 대화는 비로소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